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8차 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에 PTSD 상담 포함〉

■ 백선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609호)

2025. 11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송수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5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백선희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9. 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9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.

그런데,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.

특히 12·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·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.

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41조(전문상담관)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.	제41조(전문상담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</u>
<u>6.</u> (생략)	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-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ost-traumatic stress disorder, PTSD) (이하 “PTSD”라고 함)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불안·우울·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임.
- 2024년 12·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장병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

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 결과, 총 1,051명 중 고위험군 2명, 관심군 69명이 식별된 바 있음¹⁾).

□ 장병의 정신건강은 군 전투력 유지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, PTSD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□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업무 범위에 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로 규정하여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및 현행 제도 운영상 관련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PTSD는 국제질병분류(ICD)에 등재된 질환으로,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범위에 PTSD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현행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²⁾의 질환·그 밖의 고충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임.

1)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('25.1.14.) 국방부 기관보고 내용 중 일부

2) 「**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**」 제41조(전문상담관)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.

1.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
2.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
3. 구타, 폭언,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
4. **질병·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**
5.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
6. **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**

- 제도적으로도 국방부는 2005년부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, 군 내 자살, 대형 사건·사고, 국가적 재난현장 투입 등으로 PTSD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, 정신건강의학과 군의원, 정신건강전문요원, 병영생활전문상담관, 군종장교 등으로 구성된 ‘정신건강현장지원팀’을 편성하여 안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³⁾.
- 따라서 PTSD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.
-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정신건강 분야를 상담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건강하고 안전한 군 복무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310

3) '24년 제주항공 참사, '25년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등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장병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.

※ 참고자료 :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임무 및 현황

(기준: 2025. 8. 31. / 단위: 명)

구분	총계	육군	해군	공군	해병대	국직
정원	700	526	43	55	34	42
현원	655	494	41	52	29	39

* 상담관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대내외 요구, 부적응자 등에 대한 적시적·지속적 식별·관리 등 제도 효과 제고를 위해 대대급(500명 내외)당 상담관 1명 배정을 목표로 '24년부터 단계적 증원 추진 중

** ('24) 660명 → ('25) 700명 → ('26) 780명 → ('27) 860명 → ('28) 940명 → ('29) 1,000명

○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임무 * 「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」 등

- 도움·배려장병 등을 포함 개인·집단상담(출장상담), 장병 등의 심리검사 결과 분석 및 상담간 생명·안전 위협, 기본권 침해 등을 인지 시 지휘관 보고 및 지휘 조언
- 초임 또는 5년차 미만 간부, 전입간부 대상 의무상담
- 자살예방교관 및 상담능력이 필요한 간부(또래상담병 포함) 대상 상담 관련 교육 및 지도
- 지휘관 전입 시 상담계획 등 보고 및 자발적인 상담 분위기 조성
- 신상관리위원회 등 상담소견서 작성 및 참가, **필요시 정신건강현장지원팀 활동**

○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 요건

- 현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과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자로 학위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요구함
- 특히, 심리상담 등 전문 이론과 실습을 일정기간 수련 시 발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있으며, 「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)도 포함되어 있음